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717 발의연월일: 2022. 2. 9.

발 의 자:이헌승·김승수·김은혜

김태흠 • 박덕흠 • 박성민

서병수・유의동・이양수

이주환 · 이채익 · 전봉민

조명희 • 황보승희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19로 음식 배달이 늘면서 도로를 운행하는 이륜자동차의 수가 증가하고 이들로 인한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 역시 늘어나고 있음. 이러한 이륜차로 인한 소음은 소음기·소음덮개의 제거또는 경음기 부착 행위로 인한 것이 대부분인데, 이는 현행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로서 이를 위반할 경우 자동차의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해당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로에서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를 단속하여 현행 규정의 위반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지만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자동차의 소음기 · 소음덮개의 제거 또는 경음기 부착 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금지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6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소음 · 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음 · 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포상금 지급)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를 위반하여 소음기·소 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자를 신고하거나 고 발한 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 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46조의2(포상금 지급) 특별시장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
	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제35조를 위반하여
	소음기·소음덮개를 떼어 버리
	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자
	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
	급할 수 있다.